

Q3.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언제까지 신청 해야하는지?

- 협약 변경은 사전 변경을 원칙으로 함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소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

Q4.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됨에 따라, 다년도 과제를 연 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인지?

- 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 단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, 단계를 연 단위로 하여 매년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- 한편, 단계를 연 단위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받거나 필요시 혁신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관련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연 단위로 과제의 진행 상황은 점검할 수 있음

Q5. 혁신법에 따라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되었는데,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연차평가를 실시하여도 되는지?

- 혁신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'21.1.1부터 시행되었음. 따라서, '21.1.1부터 시작하는 협약은 혁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하여 체결되어야 함
 - ▶ 만약, 이미 연차협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협약기간을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는 협약 변경이 필요
-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가 종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며, 연차평가제도는 폐지되었음. 따라서, 21.1.1 이후 연차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혁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. 참고로, 연구개발과제 종료 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면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필요한 평가 주기에 맞게 구분하는 협약 변경을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음

Q6. 협약 체결 이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참여시키려는 경우 그 절차는?

-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연구개발기관임
-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추가하려면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해야 함
- 따라서,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에 관한 협약의 변경을 중앙행정기관(또는 전문기관)에 요청하고, 이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
 - ※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함

Q7. 과제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하여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?

- 협약체결 이후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약 변경이 가능하며, 이는 중요한 사항의 협약 변경에 해당함
-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(실무 상 승인)를 거쳐 변경해야 함
- 다만, 선정 후 협약 전에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(전문기관)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정보 변경 수준에서 변경이 가능함